



제1668호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 8 8 1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1 8 8 2 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의 회 사 무 국 7
- 조 례 제 1 8 8 3 호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의 회 사 무 국 9
- 조 례 제 1 8 8 4 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총 무 과 11
- 조 례 제 1 8 8 5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여 성 가 족 과 14
관한 조례

공 고

- 공 고 제 4 9 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5호선, 소로1-10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17
- 공 고 제 5 2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21
공고
- 공 고 제 5 2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5
- 공 고 제 5 2 9 호 도시계획시설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공 원 녹 지 과 29

고 시

- 고 시 제 1 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 도 시 재 생 과 33
시
- 고 시 제 1 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7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881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남동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

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무분장)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무국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4.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징계·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와 청결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 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및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8.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9. 각종 의안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2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21.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2.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

	2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4.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의 기록에 관한 사항
전문 위원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정책 지원관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 '22.1.13)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법안 조문 정비
-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882호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지방의회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883호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884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지역사회 봉사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 지역사회 봉사활동
 -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885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

나 출연한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시설관리 책임자”란 제2조 제2호 각 목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편리를 위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설관리 책임자는 여성이 긴급하게 보건위생물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 보건위생물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4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5호선,
소로1-10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5호선, 소로1-102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동 구 청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남동구 고잔동 726번지 외 3필지 도로개선공사

3. 사업규모

- $A=410.6\text{m}^2$
 - 중로 2-75호선: $L=198\text{m}$, $B=15\sim 16\text{m}$, $A=181.4\text{m}^2$
 - 소로 1-102호선: $L=84\text{m}$, $B=10\sim 13\text{m}$, $A=229.2\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우람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106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고잔동	726	장	9,895.3	110.9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강남교보타워	
2	고잔동	726-1	장	6,597.4	299.7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강남교보타워	

○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및 규격	수량(개소)	종류	전주번호	비고
1	고잔동	799	도	한전주	6	-	8716C011	
						-	8616H923	
						-	8616H925	
						-	8616H821	
						-	8616H832	
						-		
2	고잔동	799	도	통신주	5	-		
						-		
						-		
						-		
						-	8616H734	

3				가로등 및 가로등제어함	6	-	-		
4	고잔동	796	도	한전주	6	-	8616H735		
						-	8616H622		
						-	8616H624		
						-	8616H611		
						-	8616H5002		
						-			
5				통신주	6	-	8616H735		
						-	8616H622		
						-	8616H624		
						-			
						-			
						-			
6					가로등 및 가로등제어함	9	-		
7					지상식 소화전	2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2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3.8. ~ 2022.3.23.(15일)**
3. 공고대상 : **이륜차 6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018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11:00:16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8. ○ 견인일 : 2022.2.28.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고개로 10 한화 에코메트로12단지 1206동 B2 장애인주차구역
	2022-00019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11:01:04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8. ○ 견인일 : 2022.2.28.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고개로 10 한화 에코메트로12단지 1206동 B2 장애인주차구역
	2022-00025  2022년 1월 16일 수요일 15:00:15 1102-2 구월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19. ○ 견인일 : 2022.2.2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문화서로 65번길28-19 슈퍼맨공인중개사 앞
	2022-00028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10:50:11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24. ○ 견인일 : 2022.2.28.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713 호구포역 1번출구 근처 인도
	2022-00030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14:47:04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25. ○ 견인일 : 2022.2.2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604번길 15 컨츄리호프집 옆 이면도로

관 리 편 이	2022-0003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1.25. ○ 견인일 : 2022.2.25.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604번길 15 컨츄리호프집 옆 이면도로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0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고개로 10 한화 에코메트로12단지 1206동 B2 장애인주차구역	2022.2.28.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2-000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고개로 10 한화 에코메트로12단지 1206동 B2 장애인주차구역	2022.2.28.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2-0002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문화서로 65번길28-19 슈퍼맨공인중개사 앞	2022.2.25.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2-000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713 호구포역 1번출구 근처 인도	2022.2.28.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2-0003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604번길 15 컨츄리호프집 옆 이면도로	2022.2.25.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2-0003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604번길 15 컨츄리호프집 옆 이면도로	2022.2.25.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2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3.8. ~ 2022.3.23.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7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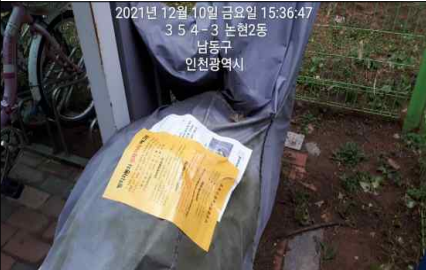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3월 8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71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9. ○ 견인일 : 2022.1.21.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사잇길
	2021-007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9. ○ 견인일 : 2022.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2021-007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0. ○ 견인일 : 2022.1.1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1-007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10. ○ 견인일 : 2022.1.1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1-0073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20. ○ 견인일 : 2022.2.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호구포로764번길 60 지하1층

관
리
편
이

2021-0074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24.
- 견인일 : 2021.12.2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고잔로88번길 44-25 정방주택 앞

2021-0074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12.29.
- 견인일 : 2022.2.9.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129-5 신천양꼬치 앞 인도 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7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사잇길	2022.1.2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7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2022.1.3.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72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2.1.1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72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로 105 논현휴먼시아5단지	2022.1.1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73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호구포로764번길 60 지하1층	2022.2.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1-0074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고잔로88번길 44-25 정방주택 앞	2021.12.2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1-0074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129-5 신천양꼬치 앞 인도 위	2022.2.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29호

도시계획시설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33호(2020.12.07.)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기간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수탁자: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78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75	산77	산79-1	10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7	183	184-8	209	217-1	227-1	280-5	282-2	284-1	415-2
	417-2	421-2	421-3	422-1	422-2	422-6	423-8	427-2	441-2	595-13
	605-20	605-21	605-22	608-1	산28-3	산28-6	산33-4	산105-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일체									

비고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 https://www.namdong.go.kr - 인천도시공사 : https://www.ih.co.kr → 공사소식/공지사항
----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3. 10.(목) ~ 2022. 3. 25.(금)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032) 260-5476~9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빌딩 20층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032) 440-5823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236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 (032) 453-6293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 시 협조 요청사항

- ①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 시 체온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최근 1년 이내 해외출국 경험이 있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는 방문 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2년 5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2.3.25.)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수탁자:인천도시공사)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22.3.25.)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련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032)260-5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6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교통행정과 ☎032-453-2724,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80-5 ~ 7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2차)

3. 사업규모

- A=1,073m²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변경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46	8~15	국지 도로	580	간석동 735-1	간석동 780	일반 도로	남동구 고시 제2021-175호 (2021.10.2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용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1	간석동	3-10	잡	2627	29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2	간석동	3-18	도	720	625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3	간석동	산4	임	5026	3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4	간석동	산4-2	도	226.0	195.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	간석동	5-2	전	574.0	10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6	간석동	5-11	답	2029.0	93.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한전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간석동	-	-	-	우	약산지9 8721Y 751	한전
2	간석동	-	-	-	우	약산지10 8721Y 741	한전
3	간석동	-	-	-	우	약산지11 8721Y 742	한전
4	간석동	-	-	-	우	약산지12 8721Y 731	한전
5	간석동	-	-	-	좌	약산지13L1 8721Y 722	한전
6	간석동	-	-	-	우	약산지13 8721Y 721	한전

통신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내용	비고
1	간석동	-	-	-	우	8721Y 742	LG U+
2	간석동	-	-	-	우	8721Y 731	LG U+
3	간석동	-	-	-	우	8721Y 721	LG U+

보안등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간석동	-	-	-	좌	간석동 1071	남동구청
2	간석동	-	-	-	우	간석동 1070	남동구청
3	간석동	-	-	-	우	가로등 자동점멸기	남동구청
4	간석동	-	-	-	우	간석동 1069	남동구청
5	간석동	-	-	-	우	간석동 1068	남동구청
6	간석동	-	-	-	우	간석동 1067	남동구청
7	간석동	-	-	-	우	간석동 1065	남동구청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40-1 (장수동)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70 (장수동)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70 (장수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29 (논현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일야하이텍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1번길 21 (간석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20-8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44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삼진연립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2-1 (고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91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7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9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1 (구월동)	2022.3.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40-1 (장수동)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3.8.	건물 등의 주된 만의골로195번길 40-1 기초구간에위치하여40-1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6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동로 30 (도림동)	2009.11.16.	오봉길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2.3.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오봉동로 30 기초구간에위치하여30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4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215 (운연동)	2009.11.16.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2.3.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 1215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15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6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68-1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3.8.	건물 등의 주된 논현고잔로54번길 68-1 기초구간에위치하여68-1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94-3, 294-21, 296-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88-1 (수산동)	2009.11.16.	아홉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2.3.8.	건물 등의 주된 구수골로 88 기초구간에위치하여88을건물번호로부여	